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정경두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방·군사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상위법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1658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 제17조의2에 반영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실내공기질 관리(제16조의2 제1항)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 중 실내공기질 관리를 해야 할
대상시설을 규정

나. 실내공기질 실태파악 및 관리기준, 세부 조치사항(제16조의2 제2항 내지 제6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0.00.~0.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신설한다.

제16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① 법 제17조의2 제2항의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단, 제2호 내지 제9호의 시설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도 포함한다.

1. 모든 지하 작전시설(지휘통제실, 문서고, 사격지휘소, 작전지휘시설 등)
2.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서관
3.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4.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가 100개 이상인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5. 연면적 430 제곱미터 이상인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

집

6.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쇼핑센터, 복지회관, 국방마트 등 대규모점포

7.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학교·교육 시설

8.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념관, 전시관

9.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병영생활(행정업무 통합시설을 포함한다), 식당

10. 실내주차장(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11. 객석수가 1천석 이상인 「공연법」에 따른 실내 강당(연간 90일 이상 또는 30일 이상 지속 사용시설에 한한다)

12. 자연환기가 제한되는 GP의 지하생활관

13. 신축·개수(리모델링)되는 50세대(실) 이상인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다음 각 목의 것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기숙사, 간부숙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며 세부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세부 조치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6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① 법 제17조의2 제2항의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단, 제2호 내지 제9호의 시설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도 포함한다. 1. 모든 지하 작전시설(지휘통제실, 문서고, 사격지휘소, 작전지휘시설 등) 2.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서관 3.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4.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가 100개 이상인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5. 연면적 430 제곱미터 이상인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6.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쇼핑센터, 복지회관, 국방마트 등 대규모점포 7.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학교·교육 시설 8.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현행	개정안
	다른 기념관, 전시관 9.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병영생활(행정업무 통합 시설을 포함한다), 식당 10. 실내주차장(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11. 객석수가 1천석 이상인 「공연법」에 따른 실내 강당(연간 90일 이상 또는 30일 이상 지속 사용시설에 한한다) 12. 자연환기가 제한되는 GP의 지하생활관 13. 신축·개수(리모델링)되는 50세대(실) 이상인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다음 각 목의 것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기숙사, 간부숙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실내 공기질 측정을 실시하며 세부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

현행	개정안
	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세부 조치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군사시설기획관 국유재산과	
연 락 처	02-748-5863